

#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9-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4월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### ○ 용어의 정리 (안 제2조)

- “지역상생구역”, “자율상권구역”, “지역상생협의체”, “자율상권조합”에 대한 정의 규정
- “지역상생구역” 지정 신청 요건은 해당 구역의 평균 상가 임대료가 2년간 계속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상승한 구역

### ○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(안 제9조)

-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한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규정

- ▶ 「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재산세
- ▶ 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0조(대부료 등 감면)

- 토지 또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 시 지원 대상

- ▶ 청년상인, 초기창업자
- ▶ 「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의 조직

### ○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(안 제10조)

-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 : 소유권은 시장에게 귀속
-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 : 자부담 비율에 따라 소유권 분할

- 취득 물품 등 매각 할 경우 자부담 분담 비율에 따라 귀속
-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(안 제11조)
  - 지역상생구역의 목적에 반하는 업종 및 시설에 대한 제한 규정
- 제정조례안 : 붙임1
-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붙임 3
-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  - 입법예고 : 2022. 6. 27. ~ 2022. 7. 7.(10일간)
- 기타 참고사항
  - 방침결정문 : 붙임4

##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 상권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역상생구역”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
가.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

나.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

2. “자율상권구역”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구역을 말한다.

3. “지역상생협의체”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.

4. “자율상권조합”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.

**제3조(행정상·재정상의 조치)** 안산시장(이하 ‘시장’이라 한다)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(이하 “활성화구역”이라 한다)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·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.

**제4조(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)**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설립인가 신청서
2. 정관

3. 사업계획서
4.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
5.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
6.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
7.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

**제5조**(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)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
2.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·결산의 작성
3.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·관리·처분
4.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
5.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·수수료의 징수
6.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
7.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
8.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·연구

**제6조**(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)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1.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
2. 조사·연구비용(자료 작성비, 원고료, 인쇄비, 소모품 비용, 위탁비 등 경비 일체)
3.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

**제7조**(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)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(이하 “세부 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
**제8조**(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)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

도 사업결과보고서(전자파일을 포함한다)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(전자파일을 포함한다)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**제9조(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)** ① 시장은 법 제30조 따라 활성화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활성화 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세 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재산세

2. 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0조에 따른 대부료 등 감면

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대부료 등 감면은 활성화 구역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감면한다.

④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.

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

2. 입주 신청 당시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한 초기 창업자

3. 「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의 조직

**제10조(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)**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, 건물, 공작물,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. 다만,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산시 상권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.

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, 건물, 공작물,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.

**제11조(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)**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

또는 제한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경제일자리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경제일자리과장 조 영 일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지역경제팀장 정 경 수
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현 주 (행정 2698)

#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9-5호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. 8. 25.
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## 수정이유

-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에 있어 각종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하고 탄력적인 지원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,
-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은 개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관련 조문을 삭제함.

## 주요골자

- “따라”를 “따른”으로 어법에 맞도록 조문 정비 (안 제2조제2호)
-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(활성화구역)에 대한 행정·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 (안 제3조)
- 활성화구역에 대한 재산세 및 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 삭제 (안 제9조)

# 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2항 중 “따라” 를 “따른” 으로 한다.

안 제3조 중 “해야 한다” 를 “할 수 있다” 로 한다.

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4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자율상권구역”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<b>따라</b> 구역을 말한다.</p> <p>3.~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원안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b>다른</b> -----.</p> <p>3.~4.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3조(행정상·재정상의 조치) 안산시장(이하 ‘시장’이라 한다)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(이하 “활성화구역”이라 한다)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·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<b>해야 한다.</b></p>	<p>제3조(행정상·재정상의 조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b>할 수 있다.</b></p>
<p>제9조(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)</p> <p>① <b>시장은 법 제30조 따라 활성화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</b></p> <p>② <b>시장은 활성화 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세 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</b></p> <p>1. 「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재산세</p> <p>2. 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0조에 따른 대부료 등 감면</p> <p>③ <b>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</b></p>	<p>제9조(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
원 안	수정안
<p><u>대부료 등 감면은 활성화 구역이 운영 되는 기간 동안 감면한다.</u></p> <p>④ <u>시장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</u></li> <li><u>2. 입주 신청 당시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한 초기 창업자</u></li> <li><u>3. 「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의 조직</u></li> </ol>	<p><u>시장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</u></li> <li><u>2. 입주 신청 당시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한 초기 창업자</u></li> <li><u>3. 「안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의 조직</u></li> </ol>